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7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김정호·전진숙·어기구

임미애 • 박희승 • 허종식

이연희 · 정성호 · 전재수

신영대 • 이수진 • 윤후덕

최기상 · 김남희 · 이훈기

박 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제10조의4제5항).

법률 제 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정비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④	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	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		
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	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의		
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u>다.</u>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